

2019년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3.(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1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87건(안전번호 제2019-105661호~107780호)
 - 회의결과: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을 제공한 안전번호 제2019-105661호, 105662호 및 대중가요 한 곡 전체 분량의 음원 등을 제공한 제 2019-105663호~105750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05751호~105753호는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또는 사진과 함께 대중가요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으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가 직접 촬영, 편집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함께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수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07770호~10778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프로그램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권고를 가결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879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76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 원안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함
- B 위원 : 이견이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05661호~10778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987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5661호

는 민원인(실명)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의 음원파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판매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은 일본에서 2016. 10. 11.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250에 판매 중임을 확인했음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0566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이의 없음
- B 위원 :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56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0566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실명의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원곡가수 '스즈키 코노미'의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월피스 카터'라는 일본의 우타이테가 불러서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동화'에 올린 게시물이 있는데, 이

영상물을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파일, 스트리밍 영
상물, 직접링크, 해당 곡의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링크 출처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일본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동화'임
- C 위원 : '윌피스 카터'가 니코니코동화에 올린 영상을 링크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실연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인데
상업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직접링크에 연결된 사이트 화면을 제시하면서)광
고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네이버 스트리밍 영상에는 광고가 있는지 여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스트리밍 영상을 제시하면서)
광고가 확인되지 않음
- C 위원 : 우타이테는 직업 가수가 아닌 취미활동으로 노래를 불러서
올리는 사람으로, 그 성격이 상업적이라기 보다는 그저 널리 알려지
기를 바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위원 : '윌피스카터'의 경우에는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인기
가수급 우타이테이고, 싱글 앨범을 발매하기도 하였음

- C 위원 :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면 시정권고가 가능한데 그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됨
- B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치 않더라도 네이버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판단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링크 외에도 스트리밍 영상과 mp3 음원파일, 가사를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이견이 없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니코니코동화에 똑같은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임
- A 위원 :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침해는 '업(業)'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어도 허락없이 가져다 쓰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유튜브에서는 수익의 일정부분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공존하는 플랫폼임
니코니코동화도 이와 비슷한 환경으로, 원곡이 따로 존재하고 그 원곡을 원곡 가수가 아닌 자가 실연을 했을 때는 원곡자에게 허가를 받고, 그 후에 발생하는 수익도 배분할 것임
하지만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 저작권자와 실연자 사이의 공존 생태계가 깨지게 됨

- C 위원 : 그렇다면 본 심의안건의 경우 직접 링크 외에도 음원파일과 스트리밍 영상물이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056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05663호~10575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05663호~105753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들이 최신가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은 블로그에서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먼저 안건번호 제2019-105663호~105748호 해당 영상들은 음원과 함께 음원을 실연한 가수 사진 또는 가사, 드라마 스틸 컷 등을 무단 이용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다음으로 안건번호 제2019-10574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면서 “mp3파일 다운은 비댓!으로 네이버 이메일 쳐주시면 제가빨리빨리보내드립니다다ㅎㅎ”라고 기재하고 있고, 168개의 비밀 댓글이 작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750호는 가수 ‘10cm’의 음원 한 곡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 같은 곡을 첼로 연주자가 연주한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함께 제공하고 있음

임베디드 링크는 출처가 유튜브이므로 네이버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하더라도 유튜브 영상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5663호~105750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고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A 위원 :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05751호~105753호는 게시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또는 사진과 함께 대중가요 음원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의 성격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 105751호는 개인 블로그이고, 제2019-105752호는 요양병원 블로그, 제2019- 105753호는 실내 클라이밍장 블로그임
- C 위원 : 상업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동호회 성격이 있는 블로그들인데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B 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음원저작물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05751호는 업체 홍보 등 영리 활동과도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개인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음원을 무단 이용하고 있음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모두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기 때문에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 동호회 성격의 개인, 단체에서 복제, 전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저작권 준수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경고의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모니터링 업무는 동호회 성격의 복제, 전송물보다는 웹하드 등 상업적, 계속적 성격의 침해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5663호~105750호는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05751호~105753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07770호~10778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한글과컴퓨터'사의 '(SW)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 (dead copy)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크랙 된(cracked)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복제물과 함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이용했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 PC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폭넓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한컴오피스는 Windows 프로그램과 다르게 무료로 정품파일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은 이견없이 불법복제·전송된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7770호~10778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05754호~10776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105754호~10776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5773호 가수
'헤이즈'가 부른 '(음악)We don't talk together'이라는 곡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100곡의 음원 파일이 있음
제2019-105835호는 가수 '폴킴'이 부른 '(음악)안녕'이라고 저작물명이
되어 있는데, 인기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100곡을 제공하고 있음
제2019-105938호는 모바일웹하드 사이트에서 2019. 8. 22. 방영된 '(방
송)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를 제공한 사안임
제2019-107630호는 '(SW)SJ 레인보우샤벳'이라는 서체 폰트 파일을 제
공하고 있음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할 것으로 판단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
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 원안대로 시정조치 하는 타당함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05754호~10776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19-105751호~105753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제2019-105661호~105662호, 제2019-105754호~107780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10.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